

영등포구의회
제212회 임시회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19. 3. 4.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임경태**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77호로 2019년 2월 15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 2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에 2018. 8. 24. 영등포구가 가입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의거 협의회 규약에 대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협의회 명칭 및 목적(안 제1조)
- 나. 협의회 기능(안 제2조)
- 다. 협의회 구성(안 제3조)
- 라. 협의회 임원 선출방법 및 임기(안 제4조, 제5조)
- 마. 협의회 회의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11조)
- 바. 협의회 고문 및 자문위원(안 제12조)

- 사. 실무협의회 등(안 제13조)
- 아. 경비부담(안 제15조)
- 자. 회계보고 및 결산(안 제16조)
- 차. 규약개정 및 운영세칙(안 제17조~제18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 나. 예산조치: 협의회 경비부담금 1,000만원 반영예정
(매년 1,000만원 예산 반영 조치 예정)

5. 검토의견

- 본 안건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사회적 경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 간의 사회적 경제 분야 협의 기구인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따라 영등포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 규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 안 제1조에서는 협의회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2조에서는 협의회 기능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 안 제3조에서는 협의회 구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 안 제4조부터 제5조에서는 임원에 관한 사항으로 회장, 수석부회장, 사무총장 각 1명과 복수의 부회장을 선출하며,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 안 제6조에서는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는 등 회의 및 의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 안 제7조부터 제9조에서는 협의회 의안 제출, 안건의 배부, 의견의 청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 안 제10조에서는 회의록 작성 및 추진상황 보고 등 회의 결과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 안 제11조부터 제13조에서는 협의회 효율적인 운영과 폭넓은 의견수렴, 자문을 위한 분과위원회 설치·운영, 고문 및 자문위원, 실무협의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 안 제14조부터 제15조에서는 수당 및 경비부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 안 제16조부터 제18조에서는 회계보고 및 결산, 규약개정,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검토결과,

- 본 규약의 주체인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는 2013년 설립하여 2019년 1월 현재 전국 39개의 지방자치단체가 가입되어 있으며, 이 중 서울시 자치구는 16개구가 가입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간 협의 기구로, 우리구도 2018년도에 가입을 한 상태이며,
- 본 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 간의 공동연대 체제를 구축하여 지역특성을 고려한 노하우 전수, 제도개편 공동건의, 공동사업 발굴을 통해 지역에서부터 다양한 정책들이 시도되어 모범사례들이 모여져 사회경제를 한층 발전시켜 사회적 경제 공감대 형성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게 될 것으로 기대되며,
- 「지방자치법」 제154조(협회의의 규약)에서 규정한 사항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 본 행정협의회 참여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연간 경비부담금이 수반되는 바, 실질적인 성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긴밀한 상호 협력과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고, 연간 경비부담금 지급에 따른 소요예산 검토가 필요해 보임.

참 고 자 료

1 지방자치법

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도가 구성원이면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이면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53조(협의회의 조직) ① 협의회는 회장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과 위원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직원 중에서 선임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제154조(협의회의 규약) 협의회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의회의 명칭
2. 협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
3. 협의회가 처리하는 사무
4. 협의회의 조직과 회장 및 위원의 선임방법

- 5. 협의회의 운영과 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이나 지출방법
- 6.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55조(협의회의 자료제출요구 등)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 의견 개진,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156조(협의사항의 조정) ① 협의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정(調整) 요청을 하면 시·도 간의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 간의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관계되는 시·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조정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조정을 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제149조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

제157조(협의회의 협의 및 사무처리의 효력) ① 협의회를 구성한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가 결정한 사항이 있으면 그 결정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56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조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148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협의회가 관계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의 명의로 한 사무의 처리는 관계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이 한 것으로 본다.

제158조(협의회의 규약변경 및 폐지)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의 규약을 변경하거나 협의회를 없애려는 경우에는 제152조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2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5조(행정협의회의 구성 기준) ① 법 제152조에 따른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광역계획 및 그 집행, 특수행정수요의 충족, 공

공시설의 공동설치, 행정정보의 교환, 행정·재정업무의 조정 등의 필요를 고려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에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협의회 중 수도권 행정협의회와 대도시권 행정협의회는 수도권과 대도시권 행정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관련 시·도로 구성한다.

제96조(협의회 사무소의 위치) 협의회 사무소는 공동으로 처리할 사무의 비중이 보다 큰 지방자치단체(이하 "중심지방자치단체"라 한다)에 둔다.

제97조(협의회 구성 보고) 중심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52조제1항에 따라 협의회를 구성하면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 협의회의 명칭
2. 가입한 지방자치단체명
3. 구성목적
4. 구성일자
5. 협의회의 규약 사본

제98조(회장) 법 제153조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회장은 1명으로 하되,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협의회의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할 자를 선임한다.

제99조(회의) ① 협의회는 정기 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한다.

② 정기회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구할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개최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협의회에 대하여 시·도가 구성원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시·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인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그 개최를 권고할 수 있다.

④ 회장은 회의가 있을 때마다 협의회의 안건을 준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미리 배포하여야 한다.

⑤ 협의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⑥ 회장은 협의회 개최 후 14일 이내에 시·도가 구성원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인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협의회 개최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00조(자문위원) ① 협의회는 그 협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국가의 특별행정기관의 장, 지방의회 의원, 관련 공공단체의 장 및 관계 전문가 중에서 협의회 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제101조(운영 규정) 법 및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02조(협의체의 설립 신고 등) ① 법 제16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전국적 협의체를 설립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1. 설립취지
2. 협의체의 명칭
3. 협의체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창립총회의 회의록
5. 대표자·임원 및 회원의 성명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른다.

영등포구의회
제212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무중력지대-영등포
민간위탁 동의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19. 3. 4.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임경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무중력지대-영등포 민간위탁 동의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78호로 2019년 2월 15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 2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청년들의 네트워킹 거점공간인 무중력지대-영등포를 조성함에 따라 신규 운영하는 무중력지대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민간위탁 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시 설 명 : 무중력지대-영등포
- 소 재 지 : 영등포구 당산로 235
- 시설규모 : 지상2층 467㎡
- 위탁기간 : 2019년 7월 ~ 2021년 7월 (2년)
- 운영방법 : 전문기관에 의한 위탁운영
- 운영인력 : 시설장1 직원 2

○ 주요사업

- 청년 능력개발 및 역량강화, 지역 청년커뮤니티 활동지원, 지역 맞춤형교육 프로그램 운영, 시설유지관리

○ 이용대상 : 영등포구 청년(19세 ~ 39세)

○ 2019년도 소요예산 : 금300,000천원(시비)

(단위:천원)

구 분		예산액	집행내역	비고
민간 위탁금	계	300,000		
	인건비	103,000	인건비, 4대 보험료 등	
	운영비	71,000	공공요금, 시설관리비 등	
	사업비	126,000	교육 및 사업 프로그램 운영	

○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제6조, 제8조

5. 검토의견

-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민간위탁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일자리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구청장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사무가 민간 위탁

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임.

- 청년 커뮤니티 확대 및 활동연계를 통해 청년 문제를 스스로 인식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청년들의 소통 및 모임의 공간인 무중력지대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 2년의 기간 동안(2019년 7월 ~ 2021년 7월) 무중력지대 -영등포의 운영을 공개경쟁을 통해 청년대상 시설운영 또는 커뮤니티 활성화에 대한 현장 경험이 풍부한 민간기관(단체)을 선정·위탁함으로써 사업 운영의 현장성, 전문성 및 창의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 청년들의 역량강화,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지역연계 특화사업 운영 및 청년활동 활성화 등을 위한 청년공용공간의 전문성 있는 시설 관리·운영 및 효율적인 청년사업, 네트워크 구축 운영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며,
- 청년들의 다양한 활동을 보장하고 참여 및 소통욕구를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이용자를 청년으로 한정하나, 청년이 아닌 미성년자, 고연령자 등의 이용을 제한하기 어렵다는 점 등의 운영상 문제점 해소 및 청년만의 공간으로서 그 정체성과 조성 목적에 부합하는 운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임.

참 고 자 료

1 지방자치법

-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청년고용촉진특별법

-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력수급 전망, 청년 미취업자 실태 조사, 직업 지도,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기업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

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기업등"이라 한다)은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③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이하 "대학등"이라 한다)는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직업 지도 및 직업현장 체험 기회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일자리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제6조(청년사업 추진·지원) ①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직업상담, 적성검사, 취업능력 향상 교육 등 다양한 직업지도 프로그램 개발
2. 구인·구직 등 채용 정보 제공
3. 구직자와 기업을 연결시켜주는 채용박람회 개최
4. 청년일자리 창출 기업체에 대한 장려책 마련
5. 새로운 청년일자리 모델 발굴 및 육성

② 구청장은 청년의 고용확대와 생활안정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청년사업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청년의 직업역량 강화 및 취업 지원
2. 청년의 어려운 창업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기반조성
3. 청년이 합리적 금융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육과 상담 실시
4.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 활성화

제8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6조의 사업을 전문기관,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업무 위탁의 절차 및 사후관리 방법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중전의 제7조에서 이동 <2018.03.29.>]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라 함은 각종 법률에 규정된 구청장의 사무 중 일부를 구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로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라 함은 구청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구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개정 2013.12.12>

②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경우에 민간위탁을 한다.
<개정 2013.12.12>

③구청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